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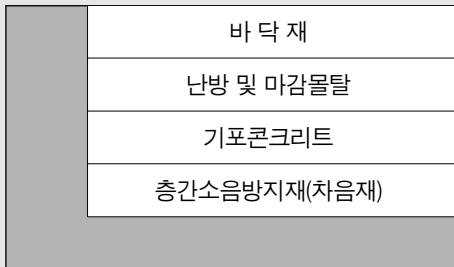


# 층간소음방지의 시공자격

대한설비건설협회는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방지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가 있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 건경-2062(2004. 5. 18)을 받았다.

**질의 내용** 층간소음방지재(차음재)를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하여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공사의 시공자격은?

※층간소음방지재의 재질 및 시공 단면도



→ 판매 및 시공제품

**회신 내용** 귀 질의의 층간소음방지재(차음재)를 시공하는 공사가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되고 건축물 내의 방음·방진을 위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[별표 1]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사료되나,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[별표 1]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(시공방법, 시공자재 등)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,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는 공사내용 등의 경우에는 [별표 1 비고 2]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·재료·시설·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.